

# 부모의 의무

부모들은 조기중재절차의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부모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FSP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 - 자녀를 위한 목표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고, 지식과 의견을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서비스 조정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정된 약속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합니다.



모든 가족이 조기 중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환경과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다음 자료는 조기 중재 시스템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꿈과 도전(Dreams and Challenges):**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의 가정 가이드
- 장애인교육법 제 C부
- 미연방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34장 제 303부
- 미연방규정 제 34장 제 560-577절 제 300부
- 미연방규정 제 34장 제 99부

### 이 문서들의 사본 입수 문의처: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음성 (410) 767-0261 • 무료 음성 (800) 535-0182  
팩스 (410) 333-8165 • 문자전화 (410) 333-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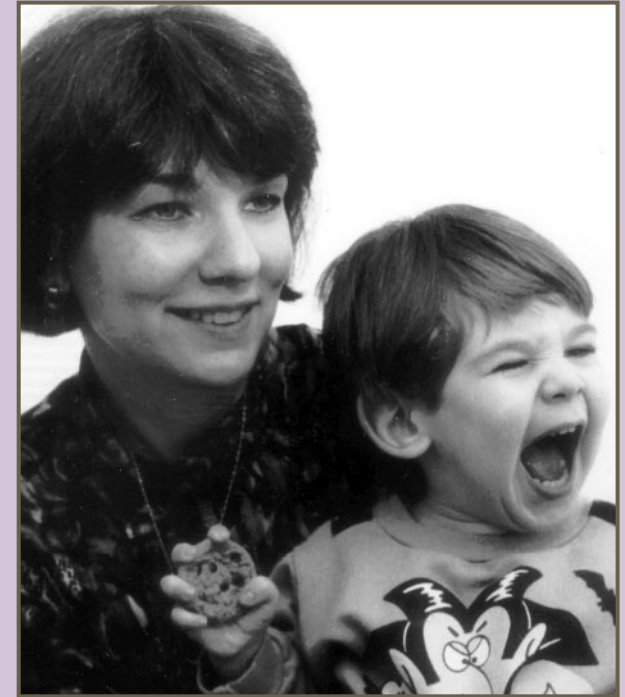
Robert L. Ehrlich, Jr.  
주지사

Edward L. Root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 회장

Nancy S. Grasmick  
주 교육감

Carol Ann Baglin  
주 부교육감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은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성, 연령, 출신국가, 종교 또는 장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전화 410-767-0246, 팩스 410-333-2226, 또는 문자전화 410-333-6442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가 미국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의 자금 지원(장애인교육법 제 C부, 허가번호 H181A020124)을 통해 개발, 제작한 것입니다. ◆ 여기에 명시된 견해가 반드시 미국 교육부 또는 기타 연방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정보는 저작권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이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 및 공유할 수 있으나 제작자는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임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 미국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이 자료는 요청 시 다른 형태로도 이용가능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는 음성 410-767-0261, 팩스 410-333-2661, 문자전화 410-333-073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중재 시스템에서의 부모의 권리 및 의무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메**릴랜드 조기중재 시스템의 기초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정과 전문가간의 협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가정중심의 개별화된 가정서비스플랜(IFSP)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IDEA(장애인 교육법) 제 C부와 메릴랜드 주 규정 01.04.01에 따라, 조기중재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특정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이러한 권리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와 가정을 위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모의 견해와 선호가 표시되어 존중되도록 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조기중재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가정에 부모의 권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담긴 "꿈과 도전: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가정 안내서"를 한 부씩 드립니다.

## 메릴랜드 조기중재 시스템에서 부모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평가, 판단 및 조기중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동의

부모들은 자녀와 가정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령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지 않고 주법에 따라 조기중재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조기중재기록의 검토 및 수정 요청

부모들은 자녀의 조기중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록에 부정확하거나 그릇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들은 해당 기록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조기중재 시스템에 의해 제안된 권리와 조치에 대한 통지 수령

부모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만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조기중재 시스템에 참여하는 전 기간에 걸쳐 부모들은 평가 및 서비스가 시작되거나 변경이 제안될 때마다 모국어로 해당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 개인정보의 비밀 준수 요구

부모들은 조기중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의 신원 확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MITP)에 불만 제기

다음 사항에 반대할 경우, 부모들은 조기중재 시스템 참여 기간 동안의 언제라도 MITP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조기중재 서비스에 대한 자녀의 자격 결정, (2) 자녀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 (3) 자녀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4)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의무.

### ❖ 공정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공식 불만의 해결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절차 및 공정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MITP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공정불만 해결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